

서울고등법원 2020. 12. 15 선고 2020나2007130(본소), 2020나2007147(반소) 판결
[임금 · 구상금 청구의 반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2. 15 선고 2020나2007130, 2020나20071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7가합572020, 2018가합589100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1. A

2. D

3. E

4. F

5. J

6. K

7. L

8. M

9. O

10. T

11. Z

12. AB

13. AD

14. AF

15. AJ

16. AN

17. AO

18. AP

19. AQ

20. AR

21. AT

22. AV

23. AW

24. AY

25. BC

26. BF

27. BG

28. BK

29. BL

30. BM

31. BN

32. BP

33. BU

34. BW

35. BX

36. BY

37. CE

38. C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기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종명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CL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윤여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7가합572020(본소),

2018가합58910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4.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재 판사 박혜선 판사 강경표